

청주지방법원 2019. 5. 9 선고 2019가단57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재단법인 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5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2018. 10. 1.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6,702,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1. 15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강부영

별지